## 학생정원조정위원회 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생정원조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성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 - 1.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내외로 구성한다.
  - 2. 기획조정처장, 교학지원처장, 대학원장,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법인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된다.<개정 2015.1.13><개정 2017.09.25>
  - 3. 위원회에는 학생정원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 또는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4. 분과위원회 또는 연구위원회에서는 학(부)과 신·증설 및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연구·검토한다.
- 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15.1.13>
  - 1. 학부(과), 대학원의 신·증설 및 폐지에 관한 심의
  - 2. 학부(과), 대학원의 명칭 변경 및 통·폐합에 관한 심의
  - 3. 전체정원 및 계열 학부(과)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
  - 4. 기타 정원조정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- **제4조(위원장)** 위원장은 입학홍보처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13.12.4.>
  <개정 2015.1.13.><개정 2017.9.25.>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7.22.>
- 제5조(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은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**제6조(회의소집과 의결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- **제8조(업무관장)** 위원회에 관한 제반 업무는 입학홍보처에서 관장한다.<개정 2013.12.4.><개정 2015.1.13.><개정 2017.9.25.>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7.22.>
- **제9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입학지원팀장이 된다.<개정 2013.12.4.><개정 2015.1.13.><개정 2017.9.25.>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7.22.>
- 제10조(재정) 위원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비, 조사비, 여비,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급할 수 있다.
- 제11조(비밀엄수의 의무)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시행)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.
  - ②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13조(시행규칙)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  - 부 칙(2001. 1. 1)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9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12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12. 4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5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9. 2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. 2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7. 2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